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41호 2013. 4. 15.(월)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298호(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299호(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300호(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세법」이 2013.1.1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법률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세법의 인용조항을 정비함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나.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기준을 변경함.(안 제14조)

-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액 :
5만원이하→10만원이하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749-7461, www.yeonsu.go.kr/ (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같은조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4조 중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세율) (생략)	제10조(세율)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u>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u>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u>법 제13조제5항</u>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가. <u>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u> 별장: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가. <u>법 제13조제5항제1호</u>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가. <u>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u>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가. <u>법 제13조제5항제5호</u>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u>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u>)	제12조(<u>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u>)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u>과세특례</u>)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u>과세특례</u> 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3조(<u>도시지역분</u>)----- -----도시지역분-- -----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5만원 이하</u>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납기)----- ----- ----- <u>10만원 이하</u>-----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법률 제11617호, 2013.1.1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면허에 관한 통보사항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032-749-7461, www.yeonsu.go.kr/) (참조 : 세무과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를 “법 제38조의2에”로, “별지 제18호”를 “별지 제20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과세대장 등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조례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대장 등재)①----- -----법 제38조의2 ----- ----- ----- ----- -----별지 제20호-----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8호, 2012.3.2 시행)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고자함

2. 주요내용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부칙 제2조 단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032-749-7461, www.yeonsu.go.kr/ (참조 : 세무과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단서 중 “2012년 12월 31일” 을 “2013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부 칙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는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적용한다.	제 2 조 (적 용 시 한) ----- ----- <u>2013년</u> <u>12월 31일까지</u> -----.